

중소기업공제계약 약관

1996. 5. 22 개정
1997. 6. 18 개정
1999. 1. 31 개정
2000. 3. 1 개정
2000. 12. 1 개정
2002. 10. 28 개정
2003. 11. 10 개정
2004. 6. 15 개정
2005. 3. 1 개정
2006. 8. 22 개정
2008. 12. 23 개정
2010. 1. 15 개정
2010. 12. 31 개정
2011. 9. 30 개정
2012. 3. 2 개정
2012. 9. 14 개정
2014. 3. 10 개정
2015. 2. 6 개정
2016. 8. 1 개정
2017. 3. 20 개정
2018. 5. 1 개정
2020. 12. 31 개정
2021. 5. 10 개정

이 약관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본회” 라 한다)와 공제계약자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공제계약(이하 “공제계약” 이라 한다)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본회와 공제계약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본회는 이 약관을 본부 및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 포함)에 비치하고, 공제계약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 1 장 공제계약자의 가입 및 해지

제1조(계약의 체결등) 공제계약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의한 협동조합(제3호, 제4호 제외)의 기금에 대한 가입의 청약과 본회의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동법시행령,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운용요강 및 공제규정, 취급요령등(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본회와 공제계약자 사이의 가입, 대출, 해지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 이 약관은 계약자가 발행, 배서, 인수하거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을 본회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③ 이 약관은 본회 및 각 지역본부와 공제계약자의 본·지점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3조(공제부금의 납부와 납부기간의 종료일) ① 공제계약자는 공제부금(이하 “부금” 이라 한다)을 매월 납부지정일(이하 “납부일” 이라 한다)까지 공제사업기금거래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부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③ 부금은 월액을 7회이내의 범위 내에서 미리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부금 월액을 미리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 월액의 횟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부금을 낸 기간으로 본다. 다만, 제4호공제금대출을 제외하고는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부금납부기간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매월 납부해야하는 부금월액 납입기간의 종료일은 부금총액이 아래 표의 배수에 달한 때로 한다.

가입 시기	부금월액 구분	납입기간	납입횟수	부금총액
‘21.6.3일 이전 가입자 (이하 ‘구가입자’)	10만원~ 100만원	42개월	42	(10만원~100만원)×42
		60개월	60	(10만원~100만원)×60
	150만원	40개월	40	150만원×40
		30개월	30	200만원×30
	200만원	50개월	50	200만원×50
		30만원	20개월	20
‘21.6.3일 이후 가입자 (이하 ‘신가입자’)	10만원~ 300만원 (10만원 단위)	3년	36	(10만원~300만원)×36
		4년	48	(10만원~300만원)×48
		5년	60	(10만원~300만원)×60

⑥ 납입기간의 종료일은 제5항에 따른 납입 횟수를 모두 납부한 날로 한다.

- ⑦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부금월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부금월액을 기준으로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금월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계약 청약시 납부한 부금월액을 기준으로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⑧ 제5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월부금 납입기간 종료일의 부금잔액 합계액이 6천만원이내인 구가입자가 부금잔액 합계액을 1억원 이내로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금월액은 1백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납입기간 종료일은 부금잔액 합계액이 1억원이 되는 때로 한다. 다만, 부금잔액 합계액이 1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억원에 미달한 금액 중 최고 금액에 도달한 때로 한다.
- ⑨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월부금 납입기간이 종료된 구가입자가 부금잔액 합계액을 1억원 이내로 증액하는 때에는 제6항에 따른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납입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 ⑩ 1억원에 도달한 구가입자가 부금잔액합계액을 1억8천만원 이내로 증액하는 때에는 부금월액을 1백만원 이상으로 하고 납입기간 종료일은 증액하고자 하는 부금잔액 합계액에 도달한 때로 한다.
- ⑪ 납입기간이 종료된 신가입자는 제2항에 따라 부금잔액을 증액할 수 있으며, 부금잔액 합계액은 1억8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4조(지연된 부금의 납부) 부금납부가 지연된 경우 지연부금납부일을 부금납입일로 하며 그 지연된 부금액은 당초 납부일로부터 지연납부일까지의 기간이 다시 경과되지 아니하면 대출한도 산정기준이 되는 부금납부합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제5조(부금납부기한의 유예)** ① 본회는 공제계약자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제계약자는 그 이유 및 희망하는 유예기한을 기재한 부금납부기한유예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본회가 부금납부기한유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유예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부금 납부일, 부금월액 및 납부기간 변경) 본회는 공제계약자로부터 부금납부일 변경신청, 부금월액의 증가 또는 감소신청, 납부기간의 변경신청이 있

을 때에는 이를 승낙할 수 있다. 다만, 부금 납부일 변경 및 부금월액의 감소는 1회에 한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공제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본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제계약자가 계속하여 6회이상 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때
2. 공제계약자가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때
3. 공제계약자가 대기업으로 전환한 때
4. 공제계약자가 기금운용관리규정 및 약관을 위배하였을 때

③ 공제계약자가 사망하거나 해산, 폐업 또는 그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그 승계가 없는 때에는 당해 공제계약자에 관계되는 공제계약은 당해 사망, 해산, 폐업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8조(해지환급금) ① 본회는 공제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며, 지급율은 기금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본회가 정한다.

② 구가입자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급률이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지급률을 적용한다.

③ 신가입자가 제1항의 해지환급금 계산시에 적용하는 해지이자의 지급률은 만기해지시 청약시점의 만기이자율을 적용하며, 중도해지시 청약시점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청약당시 약정한 부금납입이 종료된 신가입자가 제12조의2제8항에 따라 부금잔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의 지급률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부금 구분	가입일 부터 기존만기일	증액신청일 부터 증액만기일(혹은 중도해지일)
기존 만기부금액	청약시점 만기이자율	증액신청 시점 만기이자율
증액 부금액	없음	증액신청 시점 만기이자율 (혹은 중도해지이자율)

⑤ 제7조제3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납입구간별 해지이자율은 해지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⑥ 부금납부회차가 12회 미만인 자에게는 납부한 부금원금만을 지급한다.

⑦ 본회가 공제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상환을 받아야 할 공제대출금의 미상환금, 위약금, 연체이자 또는 회수하여야 할 공제대출금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당해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한다.

제9조(장려금) ① 공제계약자가 부금납부 종료일 이후에도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금잔액을 기초로 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며 지급율은 기금 운용 상황을 감안하여 본회가 정한다.

② 공제계약자가 공제대출을 받은 후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해제 시까지 장려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③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지한 경우, 해지사유발생일 이후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 2 장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금의 대출

제 1 절 총 칙

제10조(공제금의 대출운용원칙) ① 공제금의 대출은 중소기업도산방지공제제도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함을 원칙으로 운용한다.

② 공제금 대출시 기금운용관리규정에서 규정하는 대출금한도 범위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며 총대출한도는 부금잔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공제금대출잔액의 합계액은 부금납부합계액의 10배를, 제4호공제금대출잔액은 부금납부합계액의 20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③ 공제금의 대출은 기금운용관리규정에 의거 실시한 대출 심사결과와 대출신청업체가 제공하는 담보능력 및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대출대상어음등에 따라 대출한도등의 대출조건을 달리 적용한다.

④ 공제금의 대출에 있어서 기금운용관리규정에서 공제기금 장기우수이용업체와 정부정책 지원 등 기타 공제기금 대출 우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 (공제금대출제한) ① 본회는 공제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공제금을 대출하지 아니한다.

1. 공제계약자의 부금납부월수가 3월미만이고 부금납부기간이 만 3월을 경과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4.3.10)

2. 공제계약자가 대출일 현재 부금의 납부를 지연하고 있을 때
 3. 공제계약자가 제1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 협동조합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
 4. 공제계약자가 공제금대출신청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을 때
 5. 공제계약자가 회생절차·파산절차개시의 신청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6. 요강 및 공제규정에 의한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될 때
 7. 공제계약자가 공제부금납부를 계속하여 3회 이상 지연하고 1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때
 8. 기타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공제계약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1호 공제금을 대출하지 아니한다.
1. 공제금대출신청이 도산 등의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였을 때
 2. 공제계약체결 전에 대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2조(기한의 이익상실) ① 공제금의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로부터 통지, 최고등이 없더라도 본회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은 대출금 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사망·실종·폐업·전업 또는 해산하였을 때
 2.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이 있는 때
 4.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5.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공제금의 대출 또는 해지환급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또는 받으려고 한 때
 6. 기타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공제금의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본회로부터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당해 제4호 공제금대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대출금전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1. 매출채권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구매기업이 부도를 내거나 파산, 채무자

회생절차 신청이 있는 경우

2. 매출채권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구매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회에 지급해야 할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3. 본회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통지가 발송된 경우
4. 본회가 양도받은 매출채권의 기본계약 등이 변경 또는 추가되었음에도 본인이 이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5. 본회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의 사고, 해지, 무효, 취소 등이 통지를 받는 경우

③ 공제금의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본인은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본회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본인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이자 또는 제1호 및 제3호공제금대출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30일 이상 지체한 때
2. 공제대출금의 상환 만료일까지 대출금 상환을 지체한 때
3. 공제부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 하여 지연할 때

④ 공제금의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본회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본회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본회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본회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본회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이외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자로 규제된 때
4. 채무자의 제1항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

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 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았을 때
- ⑤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하는 채무자가 본회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본회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 원리금·이자·공제부금·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본회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된다.

제12조의2(연대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제12조에 의한 기한이익의 상실의 경우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그 밖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를 본회가 알게 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본회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12조 제4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본회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보전수단등) ① 공제금대출에 따른 채권보전수단으로 연대보증인의 입보 또는 보증서 및 담보를 취득할 수 있으며 보증인의 자격은 법률행위능력과 변제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② 연대보증인의 입보 또는 보증서 및 담보취득에 관하여는 제1조의 기금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담보가치 감소 등의 사유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본회의 청구에 의하여 곧 본회가 인정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기로 한다.

제14조(비용부담) 채권보전에 필요한 공정증서 작성 수수료, 추심수수료 등 대

출실행 부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다만, 담보취득관련 제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한다.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부담
2. 등록세, 지방교육세, 증지대, 법무사수수료 : 본회 부담

제 2 절 제1호공제금대출

제15조(공제금대출신청) ① 제1호공제금대출신청은 공제계약자의 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상거래로 인한 채권의 회수가 곤란(이하 “회수곤란채권”이라 한다)한 때로 하며, 회수곤란채권은 중앙회회장이 정한다.

② 공제계약자가 제1호공제금의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본회 소정의 제1호공제금대출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제금대출신청서에는 기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제금의 대출조건) 제1호공제금의 대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금대출한도는 부금납부합계액의 10배 이내로 하되 기 대출된 공제금대출잔액은 대출한도에 포함하며, 무담보, 무이자로 대출한다. 단, 기금운용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의 입보 또는 보증서 및 담보 등을 징구할 수 있다.
2. 공제금대출의 상환기간은 3년(거치기간 6개월 포함)으로 한다.
3. 대손보전준비금은 공제대출금의 부실발생 정도와 공제계약자의 신용상태, 채권보전방안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액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중앙회회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대출금에서 공제하며 대손보전준비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반환하지 아니한다.
4. 공제대출금을 상환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제 3 절 제2호공제금대출

제17조(공제금대출신청) ① 제2호공제금대출신청은 공제계약자가 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어음(전자어음 포함) 또는 수표(이하 “대출대상어음등”이라 한다)

의 자금화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다.

② 제2호공제금의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본회 소정의 제2호공제금대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출대상어음등. 단,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 확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 기타 상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8조(대출대상어음등) ① 제2호공제금대출시 배서양도받는 대출대상어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거래로 인하여 발행 또는 양도배서 및 인수된 어음(전자어음 포함)
2. 지급기일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
3. 지급장소가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어음

② 제2호공제금대출시 배서양도받는 대출대상수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거래로 인하여 발행된 수표
2. 발행일(선일자. 이하 같음)이 대출실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도래하는 수표

③ 대출대상어음 등을 취득할 때에는 공제계약자는 본회 앞으로 양도배서하고 배서란 하단에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함” 이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대출대상어음등의 법적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한다. 단, 전자어음은 전자어음법에서 정하는 배서취소방법을 따르기로 한다.

제19조 (공제금의 대출조건) 제2호공제금의 대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금대출은 기금운용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입보 또는 보증서 및 담보 등을 징구할 수 있다.
2. 공제금대출한도는 부금납부합계액의 10배이내로 하며 기 대출된 공제금대출잔액은 대출한도에 포함한다.
3. 대출이자는 대출액에 본회가 정한 대출금의 이율 및 대출일수를 곱하고 365(윤년의 경우 366)로 나누며 대출일수는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대상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대출대상수표의 발행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지급기일 또는 발행일 당일은 대출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공제대출금의 상환기한은 180일의 범위 내에서 수취한 대출대상어음의 지

급기일 또는 대출대상수표의 발행일까지로 하며, 지급기일 또는 발행일이 서로 다른 수매의 대출대상어음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중 최장 기일을 대출기간으로 한다.

5. 대출대상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대출대상수표의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하며 공휴일은 대출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공제대출금을 대출대상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대출대상수표의 발행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가 정한 이자율, 계산방법에 의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제20조(공제대출금의 상환방법) 제2호공제대출금의 회수는 채무자가 양도배서한 대출대상어음등에 대한 추심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한다.

제21조(한도를 초과한 대출대상어음등) 공제금의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대상어음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에 초과금액을 반환한다.

제22조(기일전 회수 및 이자의 환급) ① 본회는 제2호공제대출금이 기일전에 상환될 경우 당해 대출대상어음등에 무담보 문언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환배서 하고 부도어음관리 및 어음반환대장에 기재하여 채무자의 확인을 받는다. 단, 전자어음 반환의 경우 전자어음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② 채무자가 제2호공제대출금을 기일전에 상환하고자할 때에는 대출대상어음등의 금액에서 회수일로부터 상환기일의 전일까지 일수에 대출시의 대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을 수납예금계좌에 입금받는다.

제23조 (대출대상어음등의 부도시처리) ① 추심의뢰한 대출대상어음등이 부도처리되었을 때에는 채무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대출금을 지체없이 상환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였을 때에는 부도처리된 대출대상어음등에 “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이라는 무담보문언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환배서 반환한다. 단, 전자어음의 경우 전자어음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르기로 한다.

제 4 절 제3호공제금대출

제24조 (공제금대출신청) ① 제3호공제금대출신청은 공제계약자가 상거래로 인한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단기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다.

② 제3호공제금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본회 소정의 제3호공제금대출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대출잔액을 포함한 대출금이 부금잔액내 대출신청일 경우에는 제2항에 정한 징구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공제금의 대출조건) 제3호 공제금의 대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금대출은 기금운용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인의 입보 또는 보증서 및 담보 등을 징구할 수 있다.
2. 공제금대출한도는 부금납부합계액의 10배이내로 하며 기 대출된 공제금대출잔액은 대출한도에 포함한다.
3. 공제대출금의 금리는 금융기관의 대출이율을 준용하여 본회가 정하고, 대출이자는 매월 단위로 후취하며, 최종회차 이자는 대출금상환일에 상환한다.
4. 대출이자는 대출액에 본회가 정한 대출금의 이율 및 대출일수를 곱하고 365(윤년의 경우 366)로 나누며, 이 경우 상환당일은 대출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3호대출금에 대한 대환은 상환 및 횟수의 제한 없이 신규대출 취급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6. 제3호대출잔액과 당해 신청한 제3호대출액의 합계금액이 부금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3호대출잔액은 대출기간만료일에 관계없이 대환처리하고 당해 신청한 제3호대출액과 합산하여 처리한다
7. 대출대상 매출채권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본회 대출금을 우선 상환하여야 하며 어음 또는 수표로 수취하였을 때에는 제2호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8. 연체이자에 대하여는 제19조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대출금 상환방법) ① 상환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하며 공휴일은 대출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제3호공제금대출의 상환금은 상환기일까지 상환받아야 하며 상환기일이전에 분할하여 월1회 조건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 ③ 대출금의 상환과 이자는 공제계약자의 공제사업기금거래예금계좌에서 본회의 예금계좌로 해당기일에 이체한다.

제 5 절 제4호공제금대출

제27조(공제금대출신청) ① 제4호 공제금대출 신청은 공제계약자가 상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매출채권(어음은 제외한다)의 자금화가 지연(이하 “자금화지연채권”이라 한다)됨으로 인하여 도산할 우려가 있을 때로 한다.

② 제4호공제금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본회 소정의 제4호공제금대출신청서와 대출대상매출채권을 첨부하여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하는 대출대상매출채권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Gateway시스템”으로부터 전자문서로 수신한 전자보험채권 내역을 구매기업이 본회 공제기금 홈페이지(<http://fund.kbiz.or.kr>)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확인하면 대출대상매출채권이 발행되고, 본회에 제출된 것으로 같음한다.

제28조 (대출대상매출채권 등) ① 제4호공제금대출시 양도받는 대출대상매출채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제계약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e-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등록한 매출채권을 신보에서 보험대상임을 확인하고(이하 “전자보험채권”이라 한다), 이 전자보험채권을 구매자가 확인한 매출채권
2. 결제기일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작성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도래하는 매출채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공제계약자가 매출채권으로 등록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공제계약자가 구매기업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한 후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2. 국세청에 정상적으로 신고된 전자세금계산서
3.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작성일자)가 신보의 해당 매출채권보험개시일부

터 매출채권보험 종료일이내인 전자세금계산서

제29조(공제금대출조건) 제4호공제금의 대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금대출은 기금운용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대상매출채권 및 신보에서 취급하는 매출채권보험금청구권을 본회에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제금대출한도는 부금납부합계액의 20배이내의 금액과 자금화지연채권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기 대출된 공제금대출잔액은 대출한도에 포함한다.
3. 대출이자는 대출실행당일에 수취하고, 대출액에 본회가 정한 대출금의 이율 및 대출일수를 곱하고 365(윤년의 경우 366)로 나누며 대출일수는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대상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결제기일 당일은 대출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공제대출금의 상환기한은 180일의 범위내에서 수취한 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로 하며 결제기일이 서로 다른 수매의 매출채권을 취득하였을 때는 그 중 최장 기일을 대출기간으로 한다.
5. 대출대상매출채권의 결제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하며 공휴일은 대출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공제대출금을 대출대상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한 금액에 대하여 본회가 정하는 이자율, 계산방법에 의하여 연체이자를 부과한다.
7. 공제대출금을 대출대상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 상환하지 아니하여 본회가 부과한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공제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추가 공제금대출을 제한한다.

제30조(공제금대출금의 상환방법) ① 제4호공제대출금의 회수는 대출대상매출채권의 결제기일에 구매기업이 결제하는 대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상환한다.

② 본회는 구매기업이 대출대상매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대출금의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5영업일이 경과하여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계약자가 본회에 담보 제공한 대출대상매출채권보험금청구권의 보험금으로 상환하고, 보험금이 대출금보다 적은 때에는 공제계약자는 즉시 나머지 대출금을 상환한다.

제31조(한도를 초과한 대출대상대출채권) 공제금의 대출한도를 초과한 대출대상대출채권을 취득한 경우는 대출금의 상환기일에 초과금액을 반환한다.

제32조(기일전 회수 및 이자의 환급) 본회는 제4호공제대출금이 기일전에 상환되었을 때에는 상환일로부터 상환기일의 전일까지의 수입이자를 환급한다.

제33조(대출대상대출채권의 미결제시 처리) ① 본회는 구매기업이 대출대상대출채권의 결제기일까지 대금을 결제하지 않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은 때에는 신보에 미상환내역을 통지한다.

② 본회는 대출금의 상환기일 다음날부터 5영업일이 경과하여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보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며, 신보로부터 보험금 지급 결정을 통지를 받은 후 공제계약자에게 대출채권을 재양도하고, 그 내용을 구매기업의 최종주소지로 통지한다.

제 3 장 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 결제제도

제34조(용어정의) ① 이 약관의 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 결제제도(이하 “결제제도”라 한다)에 대해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을 말한다.
3. “구매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 등을 구매하고 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4.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하고 전자방식 외상대출채권으로 결제받는 기업을 말한다.
5. “e-마켓플레이스”라 함은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게 재화 및 용역 등을 제공하고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공인전자서명으로 등록된 정보 등을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이하 “외담대” 라 한다)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본회가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한다.
7.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 라 함은 본회가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래한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본회가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한다.
8. “미결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이라 함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만기일에 구매기업의 결제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결제되지 않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말한다.
9. “전자적 장치” 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결제 및 담보대출 등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컴퓨터 등의 장치를 말한다.
10. “접근매체” 라 함은 결제제도 이용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나. 기타 본회와 이용자가 합의한 방식에 의한 전자적 정보

②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와 관련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금융기관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 B2B업무규약 및 동 시행세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결제제도 이용계약의 체결 및 변경) ① 이용자가 결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본회에 결제제도 이용신청을 해야한다.

② 제1항에 대한 본회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용자는 본회와 결제제도 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③ 이용자는 결제제도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본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결제제도 이용계약의 해지) ①이용자가 결제제도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본회에 해지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기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및 기취급된 외담대에 대하여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 및 외담대 상환시까지 이용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37조(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및 용도) 구매기업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그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정상적 영업활동에 의한 재화 및 용역 등의 구매대금 결제용도로만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38조(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절차) ① 구매기업은 본회와 제3조에서 정한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② 판매기업은 구매기업과의 상거래를 통해 발생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내역을 e-마켓플레이스를 통하여 등록한다.

③ e-마켓플레이스는 판매기업이 등록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내역을 신보에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④ 신보는 e-마켓플레이스로부터 전송받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내역을 본회에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⑤ 구매기업은 본회가 정한 시간까지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본회 공제기금 홈페이지(<http://fund.kbiz.or.kr>)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보로부터 전자문서로 수신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내역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로 서명한다.

제39조(결제방법) ① 본회는 만기 도래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내역을 구매기업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구매기업은 만기 도래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해당금액을 본회가 정한 시간까지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제2항의 입금금액을 구매기업 결제계좌에서 예금청구서 없이 출금하여 판매기업 계좌에 입금하거나 판매기업의 외담대를 상환하기로 한다.

제40조(결제자금 부족 시 결제절차) ① 같은 날 만기 도래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 여러 건인 경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결제순서는 본회가 정한 바를 따른다.

② 구매기업이 결제권한을 갖는 서로 다른 수 개의 지급채무가 경합하는 경우 구매기업이 요청하는 순서에 따라 결제하기로 한다.

제41조(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정보집중 및 제한) ① 본회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발행, 취소, 변경 및 미결제 정보 등을 신보에 집중하여 은행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 앞 정보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생략하기로 한다.

③ 본회는 제1항에서 수집된 미결제 정보를 통해 이용자의 결제제도 이용을 아래와 같이 제한할 수 있기로 한다.

가. 구매기업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제한

나. 기 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판매기업의 외담대 취급 제한
다.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등급 재산정

라. 구매기업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미결제에 따른 본회의 결제제도 이용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취소 및 변경하는 경우 본회는 구매기업의 본 결제제도 이용 제한

제42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본회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전자적 장치 및 대체 전자적 장치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본회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 형태로 이용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③ 이용자는 요청한 거래내용과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제43조(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정정)** ① 구매기업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정정을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 전 본회 영업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판매기업이 외담대를 취급한 경우에는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정정이 불가하다.
- ③ 구매기업은 기 발행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정정시 판매기업의 동의를 받기로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는 판매기업의 동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당일에 취소/정정하는 경우
나.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문이 송달된 경우
- ⑤ 구매기업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의 취소/정정에 관한 판매기업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판매기업 앞 취소/정정 통지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 발송 및 취소신청서 제출시 판매기업의 동의 없이 취소/정정이 가능하다.

- 제44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본회는 판매기업이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등록한 매매계약내용 등에 관하여는 그 진위를 보장하지 아니하며 구매기업이 본회 공제기금 홈페이지(<http://fund.kbiz.or.kr>)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내역을 확인하고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른 공인인증서로 서명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인해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본회는 이용자간에 물품의 배송, 운송, 하자, 반품 등 매매계약 관계에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본회는 이용자가 본회에 제출한 주소(이메일 주소 포함)의 오류기재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본회는 본회의 과실로 접근매체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 를 보상하기로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하기로 한다.

- 가.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본회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또는 테러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나.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다.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적 장치를 사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라. 본회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45조(통지의 효력) ① 본회가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메일 주소 등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에 입력된 때를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용자가 제3조 제4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하여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이용자에게 연락하거나 도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회가 이용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6조(이의 제기) ① 이용자는 결제제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이용자가 본회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본회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이용자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본회의 사고 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본회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금융결제원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중소기업공제계약 약관을 적용한다.

제 4 장 공제대출금 사후관리등

제48조(연체독촉) 본회는 공제대출금의 상황이 연체되었을 경우에는 기금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49조(채권의 인수) 본회는 공제계약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공제계약자이외의 제3자에게 당해 채무를 인계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자 및 당해 제3자와의 사이에 당해 채무에 관계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0조(상환기일의 유예) ① 본회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공제금의 대출을 받은 자가 공제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상환기일을 유예할 수 있다.

② 공제계약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대출금 상환기일의 유예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이유 및 희망하는 상환기일을 기재한 상환기일유예신청서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주소변경등) ① 공제계약자는 사업체명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청약서에 날인한 인감이나 공제사업기금 거래용통장을 분실, 멸실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본회에 소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본회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본회는 공제계약자에 대하여 그 공제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서등의 방법으로 제출 또는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2조(서명인감의 대조등) ① 공제계약자(대리인 포함)가 해지환급금등의 신청 시에는 본회에 신고한 서명(또는 기명), 인감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미리 신고한 서명, 인감등과 대조하여 본회가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급하거나 신고사항등을 처리한 때에는 도용, 위조, 변조, 기타사고로 인한 어떠한 손해도 본회가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3조(양도, 질권설정등 금지) 본회에 납부한 부금은 본회의 승낙없이 양도 또는 질권 설정이나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54조(단수처리) 공제대출금, 위약금, 해지환급금, 대손보전준비금 및 제이자등의 단수처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호공제대출금액의 단위는 10만원 단위로 하고 10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2. 제2호공제대출금액의 단위는 대출대상어음등의 금액과 일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에 의한 대출대상어음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위약금, 제이자, 해지환급금, 대손보전준비금의 단위는 10원 단위로 하고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4. 제1호공제금대출에 따른 상환금의 단위는 만원단위로 하고 만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최종회 상환금에 가산하여 조정한다.

제55조(보칙)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에 의한다.

② 기금운용관리규정이 개정된 때는 이 약관중 관련규정은 기금운용관리규정의 개정내용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약관 시행일 이후 이자등과 연체이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대출한도, 대출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제계약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하며 이 경우 본회는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이를 본부 및 지역본부에 게시한다.

④ 공제계약자는 제3항에 의하여 이자등과 대출조건 등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계약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분회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변경전의 연체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199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적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3항, 제6항

및 제7항 규정의 적용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제부금 선납제도 및 조기경보대상기업 분류기준 개선은 2012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공제계약 약관

부 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